

충주삼성요양원 입소계약서

(시설급여)



표준약관 제10068호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충주삼성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
	원장성명	안정미 (인)	연락처	TEL: 043)847-1100 FAX: 043)847-1177
	주 소	충주시 국원대로 184, 연수빌딩 2층 충주삼성요양원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보호자연락처				
입 금		급여 (본인부담금, 약제비)	충주삼성요양원	국민은행 703001-01-500797
		비급여 (식자재비, 위탁급식, 상급병실료)		

제1조 [목적] “을”은 “갑”의 심신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갑”에 대하여 목적 시설의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갑”은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을”에게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장기요양등급의 유효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되 등급의 갱신 또는 변경, 무등급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계약당사자] “갑”이 고령과 심신 허약으로 인해 경제력 등의 상실로 인한 실질적 계약자는 가족 구성원중의 대표로 하며 대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 후 “을”과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은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의 의무

-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갑” 의무

- ① 월 이용료 지급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제5조 [입소 이용료 등 수납]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0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입금계좌번호 : 급 여 703001-01-500797 “국민은행” 예금주 : 충주삼성요양원>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전까지 납부하기로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_____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양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3,070	86,340	81,540	81,540	81,54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5,000원				
	식재료비(1식)	3,800 원 * 3식 = 11,400 원				
	간식비(2회)	2,200 원				
	이/미용료 등	없음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요양시설	1등급	1등급 차상위 (12%)	1등급 차상위 (8%)	2등급	2등급 차상위 (12%)	2등급 차상위 (8%)	3-5등급	3-5등급 차상위 (12%)	3-5등급 차상위 (8%)
28일	521,192	312,715	208,476	483,504	290,102	193,401	456,624	273,974	182,649
29일	539,806	323,883	215,922	500,772	300,463	200,308	472,932	283,759	189,172
30일	558,420	335,052	223,368	518,040	310,824	207,216	489,240	293,544	195,696
31일	577,034	346,220	230,813	535,308	321,184	214,123	505,548	303,328	202,219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 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12%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정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8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20%)		
	식사재료비/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특이사항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 부과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정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6조 [계약해지 요건]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갑”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갑”이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장기 부재에 의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을”이 인정했을 경우”.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기입원 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유보 일수에 대해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⑧ 보호자가 입소자들 앞에서 요양원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동이나 난동을 부렸을 때

제7조 [계약해지 및 퇴소]

- ① “갑”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해당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의 소정의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 ③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을”이 정하는 계약 해지서를 제출하고 기재된 계약 해지 일에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④ “을”은 전항의 계약 해제일까지 모든 제반 서류를 “갑”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이 퇴거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⑥ “갑”이 계약해제를 “을”에게 제출하지 않고 무단 퇴소했을 때는 “을”은 “갑”의 퇴소 사실을 확인한 일부터 기산하고 7일째 계약 해제일로 한다.

제8조 [입소물품] “갑”은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을”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갑”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을”에게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관리 운영]

- ① “을”은 시설장 및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을”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갑”은 이를 따라야 한다.
- ③ “을”은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병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1조 [요양생활]

- ① “을”은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들에게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입소자 검사료는 “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②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을”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갑”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그 실비는 “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시설물 관리]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밀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의사와 전문가의 사실 증명 서류를 포함해야 함)
 -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⑤ 보호자 동의 외출에 의한 배상책임 여부
 1. “갑”의 가족의 동의에 의한 외출 중 사고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6조 [“갑”에게 통지를 필요로 할 사항] “갑” 또는 “갑”의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갑”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갑”의 신원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경우
- ② “갑” 또는 “갑”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 ③ “갑”의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반차입,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 ④ “갑”의 신원인수인이 병력이 심히 중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7조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 위원회] “갑”은 이 계약 이행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사

